

참여와 대화로 준비하는 「공무직위원회」 - 노·정·전 사전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 개최, 위원회 구조기능 등 큰 틀 합의, 시행령(안) 확정 -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오는 9월 「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공무직위원회법)」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 3월 첫발을 댄 「노정전 사전 협의체*」의 두 번째 전체회의를 5월 29일(금) 개최했다.

* <정부> 고용노동부, 국무조정실, 재정경제부, 교육부, 행정안전부

<노동계> 한국노총, 민주노총

<전문가> 정흥준 교수(서울과기대), 채준호 교수(전북대), 정동관 선임연구위원(노동연구원)

사전 협의체는 법 시행(9.18.) 즉시 공무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인 ‘공무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의 향상’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인 노동계, 정부, 전문가 모두가 공감하는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. 협의체 출범 이후 2개월간 10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의를 거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.

사전 협의체는 공무직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(공무직위원회-실무위원회-발전협의회-분야별협의회)의 다층적 구성, 각 위원회별 기능 분담, 연계구조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행령(안)을 마련하였다. 시행령(안)은 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운영 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각급 위원회의 규모, 간사, 회의 소집 및 안건의 발의·상정·의결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. 6월 중 입법예고 등 공식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.

(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(안) 주요 내용)

- ① (공무직위원회) ①노사 위원 추천, ②회의 소집 절차, ③안건의 발의 및 상정, ④공무직근로자등 정의조항 중 도급·위탁 관련(필요하다고 인정 = 위원회 의결)

- ② (실무위원회) ①규모(30명 이내) 및 간사(기획단장), ②공무직칙 규정 준용, ③실무칙 검토 및 의결사항, ④발전협의회에 요청하는 사항
- ③ (발전협의회) ①규모(20명 이내) 및 위원장(실무칙 위원장 위촉), 간사, ②공무직칙 규정 준용, ③발전협의회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, ④발전협의회 회의결과 제출(실무칙)에 관한 사항
- ④ (분야별협의회) ①구성·규모(15명 이내) 및 협의회장(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지명), ②공무직칙 규정 준용, ③회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- ⑤ (운영세칙)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

사전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큰 틀의 구조를 합의·결정한 만큼, 향후 논의를 더 구체화하여 정책의제, 위원 명단, 운영세칙 등 세부사항에 대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.

회의를 주재한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“이번에 마련한 시행령(안)은 노동계와 전문가,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루어 낸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”라며, “법 시행이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, 후속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공무직위원회 「노·정·전 사전협의체」 2차 전체회의 개요
- 2.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(안) 주요내용
- 3. 공무직위원회 구성(안)

담당 부서 <총괄>	노동정책관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	책임자	팀 장	신술원 (044-202-7666)
		담당자	사무관	이유석 (044-202-7665)
담당 부서 <공동>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노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종호 (044-200-2375)
		담당자	경 감	김지훈 (044-200-2377)
담당 부서 <공동>	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한준 (044-215-5650)
		담당자	사무관	백창현 (044-215-5655)
담당 부서 <공동>	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육자치협력과	책임자	과 장	김진형 (044-203-6340)
		담당자	사무관	장연지 (044-203-6341)
담당 부서 <공동>	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	책임자	과 장	이정석 (044-205-3341)
		담당자	사무관	정인규 (044-205-3350)

① 일시 · 장소

- <일시> '26. 5. 29.(금) 16:30~17:40
- <장소> 코워커스플러스 버텍스홀 (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, 22층)

② 협의체 위원

- <위원장> **노동부** 노동정책실장
- <정 부(5)> **노동부** 노동정책관, **국조실** 고용식품의약정책관, **재경부** 공공혁신심의관,
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, **행안부** 자치분권국장
- <노동계(4)> **韓** 정책1본부장, 정책1본부국장, **民** 정책국장, 조직부장
- <전문가(3)> **서울과기대** 정흥준 교수, **전북대** 채준호 교수, **노동연** 정동관 박사

③ 논의 사항

- ①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(안)
- ② 공무직위원회 구성 방향

〈 진행 순서 〉

시간		내용	비고
16:30~16:35	(5)	▪ 개회 (노동정책실장)	
16:35~17:05	(30)	▪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(안)	노동부 발제, 전체 논의
17:05~17:35	(30)	▪ 공무직위원회 구성 방향	
17:35~17:40	(5)	▪ 폐회 (노동정책실장)	

- ① **(목적)** ^{제11조} 「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9.18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
- ② **(주요내용)** 위원회별 위원, 구성, 회의 절차 등을 규정
 - **(공무직위원회)** ^{제12~14조} ①노사 위원 추천, ②회의 소집 절차, ③안건의 발의 및 상정, ④공무직근로자등 정의조항 중 도급·위탁 관련
 - * ①종사부문 고려하여 노사위원 추천, 사용자위원은 간사위원이 추천
 - ②개최 3일 전 서면 공지, 의결시 비공개可, ③안건발의 주체(위원), 안건의 실무추 회부,
 - ④도급·위탁사업주에 고용된 사람 중 공무직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결로 정함
 - **(실무위원회)** ^{제15~17조} ①규모(30명 이내) 및 간사(기획단장), ②공무직추 규정 준용, ③실무추 검토 및 의결사항, ④발전협의회에 요청하는 사항
 - * ②실무추 위원장의 역할, 직무대행, 회의소집·개회·의결 요건 등을 공무직추와 동일하게 규정,
 - ③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, 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실무추에 상정한 사항, 그 밖에 실무추, 발전협의회 및 분야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,
 - ④발전협의회에 연구·검토 또는 대책 마련 요청 可
 - **(발전협의회)** ^{제18~19조} ①규모(20명 이내) 및 위원장(실무추 위원장 위촉), 간사(발전협의회 위원장 지명), ②공무직추 규정 준용, ③발전협의회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, ④발전협의회 회의결과 제출(실무추)에 관한 사항
 - * ②발전추 위원장의 역할, 직무대행, 회의소집·개회·의결 요건 등을 공무직추와 동일하게 규정,
 - ③실무위원회에서 연구·검토를 요청한 사항, 분야별협의회에서 보고한 사항
 - **(분야별협의회)** ^{제20~21조} ①구성·규모(15명 이내) 및 협의회장(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지명), ②공무직추 규정 준용, ③회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 - * ①분야별협의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15명 이내로 구성(협의회장 1명 포함), ②분야별협의회 협의회장의 역할, 직무대행, 회의소집·개회·의결 요건 등을 공무직추와 동일하게 규정
 - **(운영세칙)** ^{제22조}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
- ③ **(부칙 : 시행일)**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("26.9.18.)

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 구성(안)

회의체	구성(안)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무직위원회</p>	<p>┃ 공무직위 규모: 30명 이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위원장) 국무조정실장 ▷ (정부) 차관급 7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재경부·교육부·행안부·^{간사}노동부·국조실·기획처·인혁처 차관급 ▷ (노동계) 양대노총 추천 5명 이상 ▷ (사용자) 사용자 대표 5명 이상 ▷ (전문가) 학식·경험 풍부한 사람 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실무위원회</p>	<p>┃ 실무위 규모: 30명 이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위원장) 노동부차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간사) 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 ▷ (정부) 재경부·교육부·행안부·국조실·기획처·인사처 고공단(국장급) ▷ (안건관련자) 안건관련 부처(고공단)·지자체실장급·부교육감 ▷ (노동계) 양대노총에서 추천하는 사람 ▷ (전문가) 학식·경험 풍부한 사람 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발전협의회</p>	<p>┃ 발전협의회 규모: 20명 이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위원장) 노동부실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간사) 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지명 ▷ (정부) 안건관련 부처(국장급) ▷ (노동계) 이해관계 대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▷ (전문가) 학식·경험 풍부한 사람 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분야별협의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앙행정기관 분야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자치단체 분야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육기관 분야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공기관 분야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민간위탁 분야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회사 분야</td> </tr> </table>	중앙행정기관 분야	지방자치단체 분야	교육기관 분야	공공기관 분야	민간위탁 분야	자회사 분야	<p>┃ 분야별협의회 규모: 15명 이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6개 분야 구성, 협의회장은 전문가, 간사는 주요소관 부처 정부위원 <p>■ 각 분야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협의회장) 전문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(정부) 소관 부처 등 ▷ (노동계) 양대노총에서 추천하는 사람 ▷ (전문가) 학식·경험 풍부한 사람
중앙행정기관 분야							
지방자치단체 분야							
교육기관 분야							
공공기관 분야							
민간위탁 분야							
자회사 분야							

공무직위원회